

우리 연금 WM :제 2611-0105 호
수 신 수신처 참조
제 목 소규모펀드 해소 안내의 건

2025.07.07

1. 귀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아래와 같이 소규모펀드 해소에 따른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- 아 래 -

가. 대상 펀드 :

- 우리베스트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(채권)
- 우리템플턴퇴직연금글로벌40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우리퇴직연금코리아40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우리템플턴퇴직연금글로벌채권50증권자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
- 우리프랭클린글로벌스트레티지증권자투자신탁(채권)

** 모자형 이전에 따른 해소

나. 소규모펀드 정리일 : 2025년 07월 04일 (금)

우리 자산 운용 (주)
대표이사 최 승 재



- 수신처 : IM뱅크, KB증권, NH투자증권, 교보생명, 교보증권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대신증권, 미래에셋생명, 미래에셋증권, 부산은행, 삼성생명, 삼성증권, 신한은행, 신한투자증권, 우리은행, 우리투자증권, 하나은행, 하나증권, 한국산업은행, 한국투자증권, 한화생명, 현대차증권, 홍콩상하이은행 DB증권, IM증권, LS증권, 유안타증권, 한화투자증권



소규모펀드 해소 공시

(1) 소규모펀드 해소 공시

회사명	펀드코드 (운용펀드기준)	펀드명 (운용펀드기준)	효력발생일 (등록일)	최초설정일	소규모펀드가 된 시점	정리방법	정리일
우리자산운용	KR5217938665	우리베스트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2009-04-28	2009-05-04	2025-04-10	모자형 이전	2025-07-04

(2) 소규모펀드 해소 공시(세부)

회사명	모자형구조 해당여부	펀드명1 (운용펀드)	펀드명2 (투자자펀드)	펀드코드 (운용펀드)	펀드코드 (투자자펀드)	근거법률	정리일자
우리자산운용	Y	우리베스트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우리템플턴퇴직연금글로벌40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KR5217938665	KR5217702392	자본시장법	2025-07-04
우리자산운용	Y	우리베스트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우리베스트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(채권)ClassC-W	KR5217938665	K55217B17357	자본시장법	2025-07-04
우리자산운용	Y	우리베스트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우리퇴직연금코리아40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KR5217938665	KR5217785587	자본시장법	2025-07-04
우리자산운용	Y	우리베스트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우리베스트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(채권)ClassA	KR5217938665	KR5217938681	자본시장법	2025-07-04
우리자산운용	Y	우리베스트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우리베스트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(채권)ClassC	KR5217938665	KR5217938699	자본시장법	2025-07-04
우리자산운용	Y	우리베스트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우리베스트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(채권)ClassC-e	KR5217938665	KR5217938707	자본시장법	2025-07-04
우리자산운용	Y	우리베스트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우리템플턴퇴직연금글로벌채권50증권자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	KR5217938665	KR5217A62575	자본시장법	2025-07-04
우리자산운용	Y	우리베스트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우리프랭클린글로벌스트레티지증권자투자신탁(채권)ClassA	KR5217938665	KR5217AA7376	자본시장법	2025-07-04
우리자산운용	Y	우리베스트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우리프랭클린글로벌스트레티지증권자투자신탁(채권)ClassC	KR5217938665	KR5217AA7384	자본시장법	2025-07-04
우리자산운용	Y	우리베스트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우리프랭클린글로벌스트레티지증권자투자신탁(채권)ClassC-e	KR5217938665	KR5217AB5940	자본시장법	2025-07-04
우리자산운용	Y	우리베스트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우리프랭클린글로벌스트레티지증권자투자신탁(채권)ClassC-F	KR5217938665	KR5217AB5965	자본시장법	2025-07-04
우리자산운용	Y	우리베스트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우리베스트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(채권)ClassS	KR5217938665	KR5217AO8634	자본시장법	2025-07-04

※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(설립)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,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